

## 정보통신 윤리 확립 방안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이수정\*, 김영렬\*\*

**Keywords :** 정보통신, 윤리, 윤리강령

### 요 약

컴퓨터의 발달은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사회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못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과 이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들을 양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 윤리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컴퓨터 윤리체계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정보통신 윤리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대응 방안들과 그 현설적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셋째,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현재 윤리강령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윤리강령의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윤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단기적 차원의 법적 규제나 장기적 차원의 교육적 대응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자율적 합의에 의해 윤리적 원칙을 세워 갈 수 있는 윤리강령의 수립과 그 적극적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컴퓨터 윤리 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부교수

## 1. 서론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하여 이미 정보사회로 깊숙이 진입해 있다. 산업사회가 산업혁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정보사회는 정보통신 발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의 혁명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극복한 혁명이다.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을 줄이고 공간을 넓히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의 발달로, 구체적으로는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극복하려는 인류의 오랜 꿈이 실현되었다. 인터넷에 의한 정보 전달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이 무한해졌다. 그래서 혹자는 정보혁명을 시간과 공간의 혁명이라고 일컫는다[8].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극복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산업혁명 이상으로 인간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혁명은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제한되었던 “물리적 세계”에 대한 근본적 변혁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사회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못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과 이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들을 양산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컴퓨터 윤리상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향후 바람직한 컴퓨터 윤리체계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정보통신 윤리의 탄생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사이버공간의 물리적 확산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자유로운 접근이 용이해져서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정신적 여건은 불충분한 양상을 보이며 오히려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순기능적 사회 현상과 더불어 역기능적 사회 현상들이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에 대한 위협, 정

보통신 시스템의 집중화와 대규모화에 따른 재해 가능성, 정보의 범죄이용 가능성, 인간성 상실 등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 발달이 인간 사회에 가져다준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정보통신의 발달은 장벽을 허물고 있다. 인간의 구획된 삶을 어렵게 하고 있고, 나라들을 갈라놓았던 국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학술 정보는 물론이고, 금융정보와 온갖 문화적 사회적 정보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넘나듦으로써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세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화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그것도 최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의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보혁명이 몰아오고 있는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산업 사회적 틀로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들과 구조조정이 모두 정보혁명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진통의 예이다.

둘째, 정보통신의 발달은 물리적 공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정보사회는 물리적 공간의 축소와 가상공간의 확대를 초래하여, 인간의 삶이 물리적 공간보다 가상공간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전자상거래를 들 수 있다. 정보화가 진행되면 물리적 시장과 백화점은 전자상거래로 이행될 것이고, 대학 교육도 가상 강의로 이행되면서 물리적 캠퍼스는 크게 축소될 것이며, 회사의 업무형태도 물리적 사무실에서 재택 근무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화의 진척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의 발달은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정보통신 윤리라고 한다.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터넷 상의 가상공간은 하나의 엄청난 시장으로, 세계적 거대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는 유익하고 건전한 정보만이 아니고 유해하고 불온한 정보들, 폭력물 음란물 육설이 섞인 채팅, 스토킹 등이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불건전 정보들은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을 마비시키면서 사회적 양식을 혼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은 정보통신의 각 영역에서 윤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

보사회의 규범과 가치 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10].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그 정보들을 규제하느냐는 어려운 일이다. 물론 윤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요, 불변의 것이 아니고 가변적인 것이다. 윤리는 사회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회가 변하면 윤리도 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윤리가 앞장 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지는 않는다. 사회의 변화를 천천히 뒤따라 가면서, 사회의 변화를 보수적으로 규제하면서, 동시에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윤리이다.

이렇게 볼 때 윤리란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정보통신의 윤리기준도 기존의 사회적 윤리와 사회적 양식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그 윤리기준은 닫힌 자세로서가 아니고 열린 시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농경사회적 윤리의식을 지닌 기성세대들이 정보사회적 마인드로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행위를 규제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란 언제나 변화와 전제가 긴장하기 마련이고, 그 긴장의 균형을 통해 발전한다. 같은 논리로 정보통신의 윤리에서도 보수성과 진보성의 갈등은 불가피한 일이고, 그 긴장관계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제기된 윤리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3. 정보통신망의 윤리적 문제점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빛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정보 불평등이나 감시체제의 확대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부터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인간관계의 비인간성 증대와 '사이버 애고'의 등장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그리고 '인터넷 중독증'과 같은 심리적 병리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4].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거의 예외없이 윤리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윤리 분야에서 주로 거론되는 일반적 쟁점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본 뒤, 이 논문의 주제인 정보통신윤리강령 분석을 위한 배경적 논의로 범위를 좁혀서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는

1.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2. 스팸메일
3. 불건전 정보유통
4. 컴퓨터 바이러스
5. 정보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
6. 지적재산권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7.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8. 인간소외 및 정보격차
9. 기타
계

[표-1]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1]은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인터넷 이용자 3,663명을 대상으로 2000년 한해 동안의 정보화 역기능에 관한 의견 및 실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 사회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우선 해결해야 할 정보화 역기능으로 1)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54.8%), 2) 인간소외 및 정보격차 (14.9%), 3) 정보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9.3%)가 있다[7].

정보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로는 1)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2) 스팸메일, 3) 음란물로 대표되는 불건전 정보유통, 4) 컴퓨터 바이러스, 5) 정보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 (해킹), 6)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지적재산권 침해, 7) 정보접근양의 많고 적음에 따른 정보 격차, 8) 중독, 9) 이전보다 손쉬운 외국문화의 유입에 따른 문화정체성의 위기, 10) 빠른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과 지체, 11) 컴퓨터 범죄, 12)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인간관계 증대로 비롯된 인간소외와 비인간화, 13) 정보통신기술이 초래한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의 결핍으로 인한 비도덕화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사회의 문제점을 크게 일곱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음란·폭력물, 허위사실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는 음란·폭력성 정보와 허위사실은 물론 반국가, 사생활침해 내용의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는 부작용을 냥고 있다. 이러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은 생산자, 중간자, 소비자의 단계에서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로 연결되

고 동시에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기존 기술의 응용, 신기술의 등장으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PC통신, 이동전화 등 정보통신매체가 변화·발전함에 따라 불건전정보의 유통경로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정보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이다. 정보시스템에 불법 침입하여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보의 안전한 생산 및 유통을 방해하고,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국가 주요업무의 마비와 사회전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해킹기법의 등장과 해킹행위의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로 인하여 해킹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후, 우회하여 외국의 주요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킹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언론사, 금융기관 등 중요정보통신망에 침입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치적 목적의 해킹인 해티비즘(Hacktivism)의 양상도 띠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파괴력이 강한 악성바이러스의 제조방법이 공개되어 있어 PC뿐만 아니라 서버를 파괴할 수 있는 변형바이러스의 제작이 가능해졌고 감염이 쉽고 피해범위가 넓은 매크로 바이러스, 리눅스·웹기반 악성바이러스 등의 신종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다.

셋째, 개인의 통신프라이버시 침해이다. 통신에 대한 도청장비의 성능이 향상되고 구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업의 정보를 빼내거나 개인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통화내용을 도청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BBS, LAN 등 사설통신망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용 통신설비의 사적이용으로 전전한 업무환경의 파괴, 업무효율의 저하, 기업비밀의 유출 등을 경험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개인정보 유통 및 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의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결국 개인의 인격형성을 저해하고 사적 자유영역을 심각하게 위협함으로써 개인의 인간존엄을 핵심요소로 하는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

다섯째,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범죄이다. 인터

넷 상의 범죄는 통신망의 익명성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행위는 용이 하나 적발이 어려워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터넷 상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사기, 도박, 매매춘알선, 사이버스토킹으로 대표되는 성폭력행위 등은 적발과 증거확보가 어려워 처벌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여섯째, 암호기술의 부정이용이다. 종래 국가안보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암호기술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민간부문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었다. 암호기술은 민간기업의 주요기밀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민감한 정보 및 통신의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정보보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암호기술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고 타인의 암호키를 부정입수하여 암호문을 해독하거나 위·변작 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자신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각종 범죄관련 정보를 은닉하는 등의 부정사용은 안전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할 정보유통에 위해가 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게 된다.

일곱째, 전자거래의 안전·신뢰성 저해이다. 개방형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의 특성상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하여 되는 행정신청이나 신고 등의 행위시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송수신시 신용카드정보, 개인의료정보 등 중요정보의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는 EDI방식에 의한 전자거래 또는 전자서명은 안전신뢰성이 낮아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 이용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디지털 서명 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표-2]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심의한 위반사례들이다. 2001년 심의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 침해, 음란 정지영상, 불건전 대화, 음란 동영상, 불건전 만남 유도, 음란/폭력 문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들을 종합해 볼 때, 대

체로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들은 주로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폭력, 음란, 퇴폐적 언어사용과 저작권침해 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들임

년도 위반 내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저작권 침해	96	393	1,509	4,012	10,299	5,782	6,581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7	12	77	179	983	470	112
사행심 조장/피라미드				927	513	400	139
유언비어		4	6	42	34	13	30
반국가				13	51	1	0
선거부정			1,826	0	1	703	0
부당광고				13	57	18	1
음란/폭력 문자	1		8	124	1,772	408	1,299
음란/폭력 음성				346	106	0	1
음란/폭력물 판매	78	108	1,942	4,043	3,364	1,961	633
음란/폭력물 구매					274	240	65
음란/폭력물 교환					228	371	621
불건전 만남 유도				1,114	1,859	583	1,387
불건전 대화	255	628	1,112	1,169	2,079	3,004	3,503
음란물 소재 안내				112	687	624	301
언어 폭력	1,062	3,361	4,470	2,086	2,288	2,657	420
매춘					28	2	0
음란 정지영상	105	170	1,218	1,266	2,455	2,153	5,698
폭력 정지영상				3	80	78	134
음란 동영상				55	391	1,328	1,928
폭력 동영상				0	18	20	27
음란 게임				62	466	692	372
폭력 게임				1	37	4	5
기타/분류외	428	979	1,848	1,528	1,525	1,866	1,935
비심의 대상				13	12	9	18
계	2,032	5,655	14,016	17,108	29,607	23,477	25,210

[표-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연도별 위반 내용 현황(1995년-2001년)  
을 알 수 있다.

#### 4.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방안

정보기술의 발달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윤리적 문제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구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화수준이 아직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양한 차원의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화의 추진속도가 빨라질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첫째, 정보보호 정책기능 강화해야 한다. 정보화역기능 방지 정책협의 및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적 정보보호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등 각 부처에서 중점과제별로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로 역할을 분담하며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보화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기능 및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 법률로 대응이 가능하나 인력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던 음란물 차단, 도청장비·인터넷범죄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의 조직을 보강하고,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정책기능 및 조직을 보강하여 관련 부처에 대한 정보보호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외국의 동향 분석, 중요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각 부처 지원을 집중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전문기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제도적인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역기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제도를 정비하여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 관련법을 제정하고, 음란물 유통, 유언비어 유포, 인터넷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전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유포 행위처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 등 기존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교육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컴퓨터 교육시 정보화역기능 및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국제적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적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보호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육성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정보화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확보를 위하여 핵심 정보보호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기술개발 비용을 증액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을 조기 육성하여 세계정보보호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집단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다. 자율적 규제방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의 사회적 병폐를 인식하는 동시에 책임과 권리를 자각하여 주체적으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겠다는 자발적 노력에서 출발한다.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던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피해가 사회구성원 전부에게 돌아가고 있듯이 정보기술의 오용에 의한 피해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짊어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보기술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자발적 합의에 의해 수립하고 윤리적 실행에 필요한 협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윤리문제의 해결책인 동시에 정보사회의 윤리확립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야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방법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도 사회보편적 차원에서의 정보통신윤리 목표와 규범 및 기준이 확립된 다음에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법적, 제도적 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율적 규제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율적 규제의 대표적 지표가 윤리강령이라 할 수 있다.

#### 5. 정보통신윤리강령들의 내용 분석

오늘날 많은 전문가 집단들은 윤리강령을 채택

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시스템 전문가의 출현은 컴퓨터 전문가들의 주요 집단들이 그들 자신의 강령을 입안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의사들이 하포크라테스 선서 준수를 엄숙히 맹세하고, 모든 법률가들이 공통된 윤리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있는 반면에 모든 정보시스템 전문가들은 같은 법규에 의해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법률가나 의사와는 달리 컴퓨터 전문가의 자격을 요구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자격은 임의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집단의 회원 자격은 적어도 회원으로 하여금 집단의 윤리강령을 알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윤리강령을 제정했던 조직들은 이들 정보시스템 전문가들이 납득하고 널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화된 규칙들을 명확히 표현하고 통합하는데 실패했다[2].

[표-3]은 윤리강령을 갖고 있는 정보처리 협회들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윤리강령은 그 기업의 특성이라든가 그 기업 경영자의 개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리적 관리와 실천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윤리를 회사의 기본방침과 세부지침 등과 같은 문서화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명문화된 원칙이나 준칙이 없으면, 당면한 현실문제에 부딪혔을 때 취해야 할 행동기준이 없고, 따라서 비윤리적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윤리강령을 작성할 때는 일반적이고 개괄적이면서 기업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 속에서 작성해야 하며, 계층별로 구분하여 문서화하여 실천하게 할 수도 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부터 중간관리자의 입장으로, 다시 종업원의 입장에 이르기까지 행동준칙이 세분화되어 있을 수 있다[1].

한국의 경영자들은 윤리강령의 내용이 기본적인 원칙만 포함되는 것보다 상세한 설명과 실천기준을 담은 내용이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일본 경영자들의 경우, 윤리강령의 내용은 기업윤리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상세한 내용설명은 덜 중요하다고 하였다[6].

통일된 단일 국제강령이 채택된다면 이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정보기술 직종가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사회, 고용주, 고객 및 동료들에 대한 커다란 업적에 대한 대중의 강한 인식을 촉진시키

단체명	설립년도	윤리강령의 특징
데이터처리관리협회 (DPMA : Data Processing Management Association)	1951	윤리강령과 행위기준의 설정
컴퓨터전문가자격협회 (ICCP : Institute for Certification of Computer Professionals)	1973	행위법칙과 선의의 실행의 관례, 채택, 행위 법칙은 필수적이고 선의의 실행의 관례는 권장사항
전산기관협회 (ACM : Association for Computer Machinery)	1947	윤리법칙과 전문행위의 규칙 채택, 최근에는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 추가
캐나다정보처리협회 (CIPS : Canadian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1958	1989년부터 자격시험 실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느 정도의 교육과 경험이 필요함
영국컴퓨터협회 (BCS : British Computer Society)	1957	정보처리 분야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직무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을 설정

[표-3] 정보처리 협회들의 윤리 강령의 특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처리전문가협회	정보통신사업자
일반적 개인적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존중</li> <li>· 삶의 질 향상</li> <li>· 창의력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성</li> <li>· 개인 및 집단</li> <li>· 이기주의 지양</li> <li>· 공동선 우선</li> <li>· 삶의 질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성</li> <li>· 삶의 질 향상</li> <li>· 비판적 시각 중시</li> </ul>
정보화와 관련된 일반책무 (정보화의 윤리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질서 확립</li> <li>· 정보제공 및 활용</li> <li>· 바른 언어사용</li> <li>· 프라이버시 보호</li> <li>· 지적 재산권 보호</li> <li>· 정보공유 및 공개</li> <li>· 정보분배정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남용 및 정보 오용 방지</li> <li>· 정보공유</li> <li>· 프라이버시 보호</li> <li>· 비밀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바른정보제공</li> <li>· 건전정보 유통</li> <li>· 불건전 정보</li> <li>· 유통 방지</li> <li>· 프라이버시존중</li> <li>· 지적재산권보호</li> <li>· 정보질서확립</li> </ul>
공동체적 사회적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질서 준수</li> <li>· 미풍양속의 윤리 의식</li> <li>· 시민의식 형성</li> <li>· 공중도덕 준수</li> <li>· 복지사회 이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의 이익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협력</li> <li>· 자율적인 정보 통신 문화 정착 노력</li> </ul>
국가적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기밀보호</li> <li>· 국가발전</li> <li>· 민족문화 창조적 계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이익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문화의 세계화 추구</li> <li>· 해외 진출 주력</li> </ul>
국제적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번영에 이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류사회에 공헌</li> </ul>	
전문가로서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개발 및 교육</li> <li>· 권리남용 방지</li> <li>· 시스템보완및개선</li> </ul>	
조직관리자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과의 관계</li> <li>· 동료와의 관계</li> </ul>	

[표-4] 윤리 강령 내용 비교 분석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Oz는 정보기술 전문가들을 위한 윤리와 전문행위에 대한 국제적 강령이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추천하고 있다[14].

첫째, 강령은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의무를 지니는 대중, 고용주, 고객, 전문가 및 동료들과 같은 지지자들을 끼고 구성되어야 한다. 지지자들에 대한 초점은 책임분야에 대한 초점보다 더 좋은 책임감각을 유도한다.

둘째, 다른 지지자들에 대한 의무는 앞서 설명된 강령에 명시된 것과 같은 모든 의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통합된 강령은 국제적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의무로부터는 면제되어야 한다. 대중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무는 인류에 대한 의무이지 어느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아니다. 국가들의 법들은 다른 개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기술 전문가들도 준수해야만 한다.

넷째, 강령은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전문협회에 대한 의무는 전문직에 대한 의무와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협회에 대한 의무조항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일 꼭 필요하다면 각 협회는 그들의 회원에 관한 특별 강령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강령들은 통합된 강령들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강령은 구성자를 고려한 의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이 지침은 구성원들간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 전문가들이 어느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가를 진술해야 한다.

여섯째, 강령은 강령위반자와 위반정도에 대한 불평을 처리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재가 없는 윤리강령은 허약하기 그지없다. 제재는 전문가협회에서의 추방, 전문가자격증의 재취득, 전문가회의의 참가 불허 및 임시적 또는 영구적 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리하에 만들어진 통합된 강령은 진실되고 책임있는 전문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정보시스템 전문가를 포함한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윤리적 발달에 이바지함은 물론 정보시스템의 구현에 관한 관심을 대중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정보윤리강령은 전문가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규범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윤리 강령의 제정은 정보기술 전문가들에게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2].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의 윤리강령, 정보통신사업자 윤리실천강령을 비교 분석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은 컴퓨터통신이라든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의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통신이용문화를 확산한다는 목적 하에 1995년에 설립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선포한 정보통신윤리강령은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이룩’을 이상적 목표로 삼고, 그 도덕 원칙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개인의 창의력 향상,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서의 인권존중, 미풍 양속의 윤리의식, 책임성, 개인의 사생활보호, 지적 재산권의 보호, 정보사회의 분배정의 등을 내세우고 있다.(부록 1 참조)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의 윤리강령의 기본구조는 윤리강령과 이에 대한 행동지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즉 고객, 동료, 단체와 국가 및 인류사회에 대한 전문가의 의무와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한 행동지침사항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록 2 참조)

정보통신사업자 윤리실천강령은 ‘실천강령’이라 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앞서 살펴 본 강령들에 비해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부실하다. 즉, 사업자윤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덕목만 추상적으로 나열해 놓았을 뿐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규정 등이 전혀 없어서 그야말로 명목만 실천강령일뿐 실제로는 강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고 평가된다. (부록 3 참조)

[표-4]는 이상의 세 개의 윤리강령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표이다

이상으로 현재 한국에 공포되어 있는 윤리강령들의 형식요건과 책무내용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세 영역 중에서는 그래도 전문가영역의 윤리강령이 가장 형식적 외양과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사업자영역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은 강령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언문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세 영역 모두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항이 없어서 윤리강령의 고유한 자율적 규제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재규정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율적 규제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보완장치로서, 이러한 제재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윤리강령의 기능상 중대한 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개인적, 공동체적, 국가적 책무를 모두 포괄하는 정보통신윤리의 원칙과 의무 및 책임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지침, 그리고 자율적인 제재방안이 갖춰진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 6. 사례 : 호주 방송청의 기업 윤리

호주 방송청(ABA)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얻도록 하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관련 기업과 민간자문호주 기구인 넷얼럿(NetAlert)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8].

호주는 정보 공유, 시공의 초월 등 인터넷의 순기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불법 정보 유통 등 역기능 측면도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불법적인 내용물 즉, 아동포르노, 범죄행위.폭력행위의 상세 자료 뿐만아니라 청소년의 부적절한 내용물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행정적 대응, 즉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신속한 불만처리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업, 정부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 등 모두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적절한 감독자이자 선별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99년 개정된 방송 및 온라인 서비스법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불만 처리기구의 도입, 인터넷 관련 기업에 의한 기업윤리 강령의 채택 및 개발, 사회성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관련 일반 이용자와 청소년 이용자 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방송청은 법외에 인터넷 역기능적인 면을 규제하기 위하여 '규제 계획안'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인터넷 이용을 촉진하면서도 사회가 갖는 각종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규제 계획안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불만 신고 처리 절차(Online-Hotline)의 도입, 인터넷 기업의 기업 윤리 강령의 채택.개선, 사회성원에 대한 교육, 인터넷 내용물과 비합법적 활동에 대한 감시 등이다. 이중에서도 기업 윤리를 강조하여 기업 윤리 강령 채택 및 실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인터넷 기업은 ISP와 ICH의 업무 활동을 통제하는 기업윤리 강령을 채택해야 하고, 이러한 윤리 강령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일반사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윤리 강령에는 관련 기업 구성원으로 하여금 기업이 실천해야 할 불법 정보 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관련 기업의 ISP부문에 대해서 기업윤리 강령은 금지 내용물을 ISP에게 통보하는 수단, ISP에 대하여 국외송출 금지내용물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 여과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윤리 강령은 ISP가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별적 접근 금지 협정에 따라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금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한 경우에 국외 송출 금지 내용물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호주 방송청은 인터넷 기업이 사회 단체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을 경우에 기업윤리 강령을 등록하게 된다. 사안의 경증에 따라 기업윤리 강령 위반을 유연히 판단

하기 위해 등급별 규제 장치와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ISP나 ICH가 윤리강령 이행에 대한 호주 방송청의 지시를 위반하는 때에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게 된다. 호주 방송청은 인터넷기업 협회(IIA)에 의하여 개발된 3개의 윤리강령을 등록한바 있다.

산업기업윤리 강령이 2000년 1월 1일까지 개발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될 때, 이미 등록된 윤리강령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호주 방송청은 표준을 적용한다. 산업 표준은 기업윤리 강령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SP와 ICH에 대해서는 이 산업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윤리 강령이나 산업 표준이 모두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인지한 모든 ISP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의 국외 송출 금지 내용물에의 접근을 금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접근 금지를 위하여 동원되는 특정 수단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기술적.상업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7. 결론

이상으로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리적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들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율적 규제방안인 정보통신윤리강령의 현황과 그 보완 방향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정보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압축하면, 지식기반 고도 정보사회의 특징은 "인터넷 + 정보기술(IT) + 무선(Wireless) + 이동(Mobile) + 정보보호 + 프라이버시"가 서로 얹혀 있는 사회로 이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상호 작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일 가를 논의하는 것으로 좁힐 수 있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의 대응 + 기술적 측면의 대응 + 사회적 측면의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당장 집행(시행)이 가능한 Short-term Based Approach(예를 들면, 초·중·고교에 네티켓 교육실시나 네티즌 윤리강령 교육: 부록 참조)와 중장기적 시행을 위한 Long-term Based Approach의 대책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윤리 교육, 세미나, 일반대상 홍보

등을 누가, 어떤 대상을 상대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 및 홍보할 것인가를 정해야 될 것이다.

둘째, 첨단 IT 및 정보보호의 결합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조계 측면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논의에 입각한 법률 문구적인 측면이 아니라 보다 IT의 전문성을 결합한 법적 논의가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술분야에서도 법·제도적인 백업이 있어야 효과적일 것이고, 따라서 정보보호도 일반 개인의 프라이버시 대책과 결합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셋째, 정보윤리 측면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의 윤리규범은 개인의 창조적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이와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컴퓨터 가상공간의 신뢰와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권력 차원의 지나친 규제나 제재보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집단구성원 각자가 책임과 권리를 자각하여 주체적으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강조점과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은 인간의 자율적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국가·정부 측면에서는 IT 및 정보보호 인프라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반구조보호법 확립과 비상 기획 또는 21세기 대비 관련 기관/조직에서 관련 전문가 포함 및 종합적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윤리강령이 본래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윤리적 원칙과 구체적 행동 규범 및 자율적 규제장치를 갖춘 윤리강령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는 작업에 더 많은 사회적, 제도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부록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강령**

정보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정보시대의 주인이 되어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인류의 행복과 높은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품위를 높이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창의력과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도모하고 세계가 더불어 번영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정보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있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준수하며 국민정서에 맞는 미풍양속을 바로 세우는 시민의식 형성에 앞장선다.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공중도덕을 지킴으로써 정보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의 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지적 재산권은 보호하되 유용한 정보는 함께 나누는 마음가짐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모든 개인과 지역에 정보의 공개와 활용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힘씀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윤리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 뜻이 실현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부록 2>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윤리강령**

**1. 윤리 강령**

나는

-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정보시스템 활용자, 동료 단체 및 국가 나아가 인류 사회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의식을 지닌다.
- 활용자에 대하여 그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
- 동료에 대해서도 도의와 성실과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 우애하고 경애한다.
- 단체와 국가에 대해서 그 정책 수행의 효율을 높이도록 최대의 협조를 다한다.
- 인류사회에 대해서도 정보시스템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행동 지침**

윤리강령의 각 조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행동지침을 규정한다. 이 지침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실천사항이다.

나는 정보시스템 활용자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 자기혁신을 게을리 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필요시 적절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 정보와 지식을 서로 나누며 진실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정보시스템 활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나에게 부여된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
-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거나 아집을 갖지 않는다.
- 활용자의 지식이나 경험부족을 악용하지 않는다.

나는 동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 직업상의 모든 관계에서 도덕성을 바탕으로 삼는다.
- 주변의 불법 또는 부도덕한 행위는 진실성과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개인의 이익을 초월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주변의 동료가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는 힘을 나누도록 최선을 다한다.
-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동료의 무지와 무경험을 이용하지 않는다.

나는 단체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 단체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탐구하도록 노력하며, 필요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 집단 이기주의는 물론 개인적 이기주의를 배척하며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공동의 선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 단체와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직하며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 구득한 정보의 비밀성 및 은밀성을 보호한다.
- 역사에 책임을 지고 진화의 흐름에 상반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집하지 않는다.
- 정당한 승인 없이 개인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해 단체나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지 않으며, 보완 및 개선에 앞장선다.

나는 단체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 단체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탐구하도록 노력하며, 필요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 집단 이기주의는 물론 개인적 이기주의를 배척하며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공동의 선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 단체와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직하며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 구득한 정보의 비밀성 및 은밀성을 보호한다.
- 역사에 책임을 지고 진화의 흐름에 상반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집하지 않는다.
- 정당한 승인 없이 개인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해 단체나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지 않으며, 보완 및 개선에 앞장선다.

**<부록 3>**

**정보통신사업자 윤리실천강령**

우리는 미래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정보통신사업자로서 통신문화창달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강령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1. 우리는 정보통신사업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2. 우리는 사회적 도덕성에 입각하여 건전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3.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4. 우리는 불건전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며 사회공익이 우선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질서를 확립한다.
6. 우리는 비판적 시각을 중시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자율적인 정보통신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7. 우리는 전전한 정보통신문화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국익차원의 해외진출에 주력한다.
8. 우리는 정보통신윤리강령에 따라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정보통신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참고문헌>

- [1] 김상규, 임의석, “정보산업의 성장과 정보윤리의 역할”, *기업윤리연구* 제 1 호
- [2] 김성언, “정보윤리의식의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53집, 1996, pp.591~609.
- [3] 안동근, “정보통신윤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윤리의원회*, 1998
- [4] 이윤희(1998), “정보사회와 사적 영역의 위기,” *《담론 21》* 봄호, *한국사회역사학회*
- [5] 이윤희,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1998 No.3, 1998, pp.5~45
- [6] 이종영, *기업윤리-이론과 실체*, 삼영사, 1995.
- [7] 이종화, “정보화 역기능 종합방지대책”,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동향*, 1999.
- [8]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정보통신윤리 2001년 1월호*, 2001.
- [9] 최병목, “정보사회의 윤리의식 변화와 사회적 대응”, *정보통신윤리학술대회*, 2001.
- [10] 한세억, “정보사회의 윤리적 재조명과 의미”, *정보통신윤리학회 발표논문*, 2001.12.8
- [11] Deborah G. Johnson, James H. Moor, Herman T. Tavani, “Introduction to Computer Ethics: Philosophy Enquiry”,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ume 3, Number 1, 2001, pp.1~2
- [12] James H. Moor, “The future of computer ethics: You ain't seen nothin' yet!”,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ume 3, Number 2, 2001, pp.89~91
- [13] John Weckert, “Computer ethics: Future directions”,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ume 3, Number 2, 2001, pp.93~96
- [14] Oz, E., “Ethical Standards for Information Systems Professionals: A Case for a Unified Code”, *MIS Quarterly*, Vol 16, No 4, 1992, pp.423~424.
- [15] Philip Brey, “Method in computer ethics: Towards a multi-level interdisciplinary approach”,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ume 3, Number 2, 2001, pp.125~129
- [16] Terrell Ward Bynum, “Computer ethics It's birth and its future”,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ume 3, Number 2, 2001, pp.109~112